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28163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4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70,558,9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근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리아영

별지